

의 안 번 호	제153호
회 의 연 월 일	2022. 12. 19. (제505회 회의)

심의
·
의결
사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령)

제 출 부 서	경 찰 청 (교통국)
제출연월일	2022. 12. 5.

교통기획계장, 교통기획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알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의견제출 기한을 사전통지서 발송 또는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명확히 하며, 운전학원이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전산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등록증은 제출 서류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3년 1월 중 실시 예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져야”를 “갖추어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49조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6항”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93조제2항 전단 중 “지정된 일시에”를 “사전통지서를 발송 또는 발급한 날부터 15일(단, 게시판 공고의 경우에는 공고 마감일) 이내에”로 한다.

제9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별지 제94호 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 1부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조제1항”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확인증(기능교육용 자동차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증 1부(기능교육용 자동차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07조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16조제4항 중 “영 제6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영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92호서식 및 별지 제10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운전학원 등록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설립자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운영자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학원명			
	위 치			
	교육과정			
	강사의 명단			
	강사의 정원			
	교육용자동차	기능교육용	대 (예비용: 대)	
		도로주행교육용	대 (예비용: 대)	
	※ 자동차등록증상 내용을 기재 가. 차명: 나. 차량번호: 다. 소유자성명(상호):			
시설 및 설비				
개원에정연월일				

「도로교통법」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 4 -	수수료 없음
------	-------	-------	-----------

신청인 제출서류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0에 따른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의 학원 카드 1부 3.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 승인서 1부(가설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현황측량성과도(기능교육장 등 학원 시설의 면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각 1부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 1부(기능교육용 자동차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선임 통지서 1부 7. 정관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학원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학원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학원 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가설건축물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설립·운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의 것을 말하고,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모든 설립·운영자의 것을 말합니다) 3.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전산조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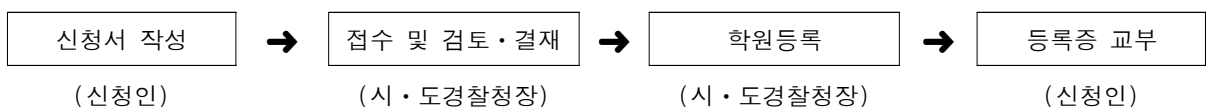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자동차운전학원 변경등록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학원 개요	학원명 학원위치 (전화번호 :)		
설립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운영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변경하려는 경우, 자동차등록증상 내용을 기재

가. 차명: 나. 차량번호: 다. 소유자성명(상호):

「도로교통법」 제9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사항(설립자 외의 사항)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 · 운영자)

(서명 또는 인)

시 · 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인 제출서류	1. 명칭 또는 위치 변경의 경우 가.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 사용승인서 1부(학원의 건물이 가설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현황측량성과도(기능교육장 등 학원 시설의 면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각 1부 다. 학원 시설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원본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는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 및 설비 등의 변경의 경우 가.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현황측량성과도 1부(강의실 · 휴게실 · 양호실 또는 기능교육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 1부(기능교육용 자동차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3.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변경의 경우 가.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신 · 구조문 대비표 1부 나. 변경사유 설명서 1부 4. 운영자 변경의 경우 가. 변경사유 설명서 1부 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원본(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전문학원 지정증을 말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위치 변경의 경우: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운영자 변경의 경우 가. 새로운 운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의 것을 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모든 운영자의 것을 말합니다) 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운영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전산조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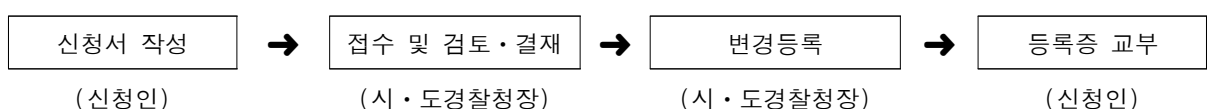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u>동법</u>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u>같은 법</u>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신호등) ①~② (생략)	제7조(신호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른 신호등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u>가져야</u> 한다. 1.~3.(생략)	③제1항에 따른 신호등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u>갖추어야</u> 한다. 1.~3.(현행과 같음)
제10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①~③ (생략)	제10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①~③ (현행과 같음)
④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u>제1항 내지 제3항에</u> 따라 알림판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④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u> 따라 알림판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제13조(어린이의 보호) ①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13조(어린이의 보호) ①----- ----- ----- -----

나에 해당하는 놀이기구를 말한다. 1.~4.(생략) 5. 그 밖에 <u>제1호 내지 제4호의</u> 놀이기구와 비슷한 놀이기구	----- ---. 1.~4.(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u>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u> 놀이기구와 비슷한 놀이기구
제49조(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 ①~⑥ (생략) ⑦<u>제1항 내지 제6항의</u> 규정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9조(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 ①~⑥ (현행과 같음) ⑦<u>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u> 규정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 절차)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u>지정된 일시에</u>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⑥ (생략)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u>사전통지서를 발송 또는 발급한 날부터 15일(단, 게시판 공고의 경우에는 공고 마감일) 이내에</u>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⑥ (현행과 같음)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①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생략)

5. 기능교육용 자동차(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 및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제100조(변경등록) ①영 제61조에 따라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동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자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①-----

-----.

1.~4. (현행과 같음)

5. 별지 제94호 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 1부

제100조(변경등록) ①영 제61조에 따라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자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

야 한다.

1.~2. (생략)

3. 시설 및 설비 등 변경의 경우가.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현황측량성과도 각 1부(강의실 · 휴게실 · 양호실 또는 기능교육장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나.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기능교육용 자동차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4.~5. (생략)

제107조(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

①~⑤ (생략)

⑥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 · 운영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교육이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감독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116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①~③ (생략)

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시설 및 설비 등 변경의 경우가. -----

나.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 1부(기능교육용 자동차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4.~5. (현행과 같음)

제107조(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

①~⑤ (현행과 같음)

⑥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 · 운영하는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교육이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감독하여야 한다.

⑦ (현행과 같음)

제116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①~③ (현행과 같음)

④시·도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교육생의 정원이 확대되어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u>영 제6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u>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도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교육생의 정원이 확대되어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u>영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u>까지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통기획과	
연 락 처	02 - 3150 - 0659